

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
- 지역 특성을 살린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웰니스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, 관광·보건·웰니스 분야를 융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로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규정(안 제3조)

-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, 기반 구축,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(안 제5조)
- 웰니스관광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의 지정 및 취소 기준과 지원 근거 규정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“웰니스관광”이란 웰니스(Wellness: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‘건강’에 대한 정의를 심화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건강 개념)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, 건강, 치유, 힐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활동을 의미함.
- 2025년 3월 20일 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웰니스관광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,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웰니스관광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10.2%의 성장이 전망됨.
-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‘우수 웰니스관광지 88선’을 발표하였으며, 충청북도는 레인보우 힐링센터 등 5곳이 선정됨. 이는 서울·제주(각 9곳)보다는 4곳 적고, 광주(1곳)보다는 4곳 많은 수치로, 본 조례를 통해 웰니스관광 활성화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,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 정의하고, 안 제3조에서는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의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, 기반 구축 및 개선, 홍보마케팅,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교육, 지역 연계, 컨설팅·연구 등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웰니스관광 지정제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.
- 안 제8조에서는 웰니스관광 자원, 사업체,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, 안 제9조에서는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건강·치유·휴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, 충청북도의 자연환경과 전통자원 등 지역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웰니스관광을 육성함으로써,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특히, 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지정제도, 협력체계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

을 확보하였으며, 체류형 관광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

- 결론적으로, 본 조례안은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틀을 제공하며, 입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,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 또한 충분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.